

—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나. 제안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22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윤영섭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

다. 주요내용

-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
-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를 차등 과세
 - 최초 등록후 3년부터 1년당 5% 경감(50%까지)
- 주행세 세율 상향 조정
 -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
- 담배 소비세 세율 상향 조정
 - 1갑당 460원 ⇒ 510원으로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세(시·군세)조례 개정 지침
- 지방세 법개정(안)에 대한 수정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지방세법 개정 에 대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최대 50%까지 차등 과세하는 내용과 주행세와 담배 소비세를 상향조정하고 농지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농업소득세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 에 따른 조례 변경 사항입니다.
타법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